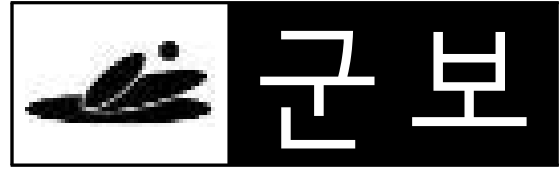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36호 2019. 4. 30.(화)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19 - 52호 : 창정리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복지)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 예산군 고시 제2019 - 53호 : 송지대야리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3
- 예산군 고시 제2019 - 54호 : 여사울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6
- 예산군 고시 제2019 - 55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9
- 예산군 고시 제2019 - 56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2
- 예산군 고시 제2019 - 58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5
- 예산군 고시 제2019 - 59호 : 예산군 납세자권리현장 전부개정 고시 18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19 - 625호 :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19
- 예산군 공고 제2019 - 690호 : 예산군 치매공공후견인 모집 공고 23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19-670호 :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9

회 람									
--------	--	--	--	--	--	--	--	--	--

창정리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복지)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창정리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복지)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창정리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복지)사업
2. 사업목적 : 마을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이음터 조성 및 공동문화복지를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와 문화복지 수요충족을 통한 문화적 소외감을 줄이고 주민 삶의 만족도 제고
3. 사업내용 및 구역
 -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일원
 - 나. 면 적 : 204ha
 - 다.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이음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건강백세교육, 선진지견학, 이음터 활성화 및 운영관리 컨설팅 등
4. 소 요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350, 도비45, 군비105)
5. 사업예정기간 : 2018년 ~ 2019년 (2년간)
6. 사업의 효과 : 이음터 조성 및 지역주민 공동체 활동과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향유 욕구 충족과 주민간 교류 확대로 마을발전 활성화 기대
7.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
9.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2, 7664)

□ 연차(기능)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기본계획			2018년 (1년차)	2019년 (2년차)	비고		
	수량	단위	사업비					
합계				500,000	150,000	350,000		
기초생활 기반충	소계			400,782	94,166	306,616		
	이음터 조성			195.75	m ²	356,994	93,903	263,091
	다목적광장 조성			865.25	m ²	43,788	263	43,525
지역 역량 강화	소계			18,000	5,000	13,000		
	주민교육	이음터활성화교육		2	회	4,000	-	4,000
		건강백세교육		2	회	4,000	-	4,000
	국내견학	선진지견학		2	회	10,000	5,000	5,000
부대비	소계			81,218	50,834	30,384		
	설계비등			1	식	40,034	40,034	-
	공사감리비			1	식	31,099	7,364	23,735
	사업관리비등			1	식	6,408	1,672	4,736
	잡지출			1	식	-	-	-
예비비				-	-	3,677	1,764	1,913

□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비고
	군	읍	리						
이음터 조성	예산	삼교	창정	218-8	전	1,061.00	195.75	박** 외 3인	
	소계						195.75		
다목적광장 조성	예산	삼교	창정	218-8	전	1,061.00	865.25	박** 외 3인	
	소계						865.25		
계							1,061.00		

송지대야리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송지대야리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송지대야리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2. 사업목적 : 송지대야리 마을의 특색있는 마을경관 형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적인 마을운영 활성화
3. 사업내용 및 구역
 -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송지대야리 일원
 - 나. 면 적 : 329.9ha
 - 다. 사업개요
 - 지역경관개선 : 공동체정원 조성, 마을통행로 조성, 정류소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및 견학, 위탁교육, 홍보마케팅, 부대비 등
4. 사업비소요액 : 500백만원(국비350, 도비45, 군비105)
5. 사업예정기간 : 2018년 ~ 2019년 (2년간)
6. 사업의 효과 : 마을 내 우수한 경관자원과 연계된 생태경관마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7.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
9.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2, 7664)

□ 연차(기능)별 투자계획

< > 자부담 (단위 : 천원)

구분	기본계획			2018년 (1년차)	2019년 (2년차)	비고			
	수량	단위	사업비						
합계				500,000	150,000	350,000			
지역 경관 개선	소계			300,000	103,800	196,200			
	공동체정원 조성		857	m ²	152,319	103,800	48,519		
	마을통행로 조성		476	m ²	118,670	-	118,670		
	정류소쉼터 조성		2	개소	29,011	-	29,011		
지역 광 강화	소계			120,000	0	120,000			
	위탁교육	숲해설가양성교육	1	식	5,000	-	5,000		
	주민교육	가드닝교육		8	회	32,000	-	32,000	
		목공예교육		8	회	32,000	-	32,000	
		스마트폰교육		5	회	10,000	-	10,000	
	국내견학	선진지견학		3	회	15,000	-	15,000	
	홍보마케팅	정원스토리텔링		1	식	16,000	-	16,000	
		정원축제		1	회	10,000	-	10,000	1년 1회 내
부대비	소계			80,000	46,200	33,800			
	설계비등		1	식	34,806	34,806	-		
	공사감리비		1	식	31,490	9,447	22,043		
	사업관리비등		1	식	6,491	1,947	4,544		
	잡지출		1	식	7,213	-	7,213	전신주 이설 등	
예비비				-	-	-	최대 10% 내		

□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공동체정원 조성	예산	대흥	대야	135-3	대	19	19	예산군	
				135-4	대	74	74	예산군	
				135-5	대	331	331	송지대야리 새마을회	
				135-6	창	168	168	안*** **문중	
				83-3	전	143	-	박** 외 1인	
				346	유	1,583	265	국(농림부)	
	소계						857		
마을통행로 조성	예산	대흥	대야	132-4	답	71	38	예산군	
				134-1	답	712	147	한국농어촌 공사	
				134-4	답	554	291	한국농어촌 공사	
	소계						476		
정류소쉼터 조성	예산	대흥	대야	134-4	답	554	-	한국농어촌 공사	
				1-4	도	7,665	-	예산군	
	소계						-		
계							1,333.0		

예산군 고시 제2019 - 54호

여사울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여사울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여사울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2. 사업목적 : 여사울마을의 문화·경관자원을 활용한 즐겁고 건강한 여사울
뜨레 조성으로 한국 천주교의 성지에서 농촌마을 발전의 성지로
새로운 발돋움 시작
3. 사업내용 및 구역
 -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1리 일원
 - 나. 면 적 : 81.4ha
 - 다. 사업개요
 - 지역경관개선 : 여사울 공동체정원 조성, 여사울 트랙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마을가드너 양성교육, 우리마을 안전교육, 제경비 등
4. 사업비소요액 : 390백만원(국비273, 도비35, 군비82)
5. 사업예정기간 : 2018년 ~ 2019년 (2년간)
6. 사업의 효과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만족도 증진 및 주민의식
함양과 마을의 지역정체성 확립으로 향후 연계사업 추진 등
주민 참여의욕 고취로 지역개발의 시너지효과 기대
7.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
9.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2, 7664)

□ 연차(기능)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기능별	세부공종	단위	수량	총사업비	연차별		비고
					2018년	2019년	
합 계				390,000	150,000	240,000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309,757	106,317	203,440	
	○ 여사울 공동체정원 조성	㎡	1,778.0	203,440	-	203,440	
	○ 여사울 프락마당 조성	㎡	3,470.8	106,317	106,317	-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20,000	6,000	14,000	
	○ 마을가드너 양성교육	식	1	14,000	-	14,000	
	○ 우리마을 안전교육	식	1	6,000	6,000	-	
기타 경비	소 계			60,243	37,683	22,560	
	○ 기본계획비	식	1	19,350	19,350	-	
	○ 세부설계비	식	1	9,689	9,689	-	
	○ 공사감리비	식	1	24,731	6,171	18,560	
	○ 사업관리비	식	1	5,096	1,096	4,000	
	○ 예비비	식	1	1,377	1,377	-	

□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면	리						
여사울 공동체 정원 조성	예산	신암	신중	136-10	대지	1,576.0	1,576.0	사유지 (재*** ***) *** ***)재 단)	
				136-11	대지	990.0	200.0	사유지 (재*** ***) *** ***)재 단)	
	예산	신암	두곡	78-2	도로	1,654.0	2.0	국(국토교통부)	
	소 계					4,220.0	1,778.0		
여사울 트랙마 당 조성	예산	신암	신중	96-5	주차장	651.0	62.5	사유지 (재*** ***) *** ***)재 단)	
				435-1	도로	630.0	98.1	국(농림축산식품부)	
				435-2	구거	359.0	345.7	국(농림축산식품부)	
				435-3	구거	612.0	522.0	국(농림축산식품부)	
				420-1	도로	527.0	78.3	국(농림축산식품부)	
				420-2	도로	904.0	136.8	국(농림축산식품부)	
				60-1	도로	13,807.0	2,227.4	국(국토교통부)	
	소 계					17,490.0	3,470.8		
계						21,710.0	5,248.8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9.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신리 321-69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863-13	20190419	신축	20090825	도청이전지를관통하는주도로로지역적특성을 반영하여도청대로로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9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79	20190419	신축	20091210	예산읍의 중심도로로 행정구역명을 반영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188-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113-21	20190419	누락	20091113	덕산온천지구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4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 151, 151-2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좌분양막로 415	20190419	신축	20091113	좌방리, 분천리, 양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 1039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두리별리길 425-66	20190419	신축	20091113	삼교읍 두리와 신암면 별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삼교리 367-2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삼교재뜰길 71	201904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삼교)와 고유지명(재뜰)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48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길 30-8	201904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주령리)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불무길 150-21	2019041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차동리)과 고유지명 (불무)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월산리 150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효림송석길 96	20190419	신축	20091113	효림리와 송석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1길 5-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1길 5-3	20190419	소유자 요청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재뜰길 71	20190415	건축물 멸실 및 재건축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24.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327-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234	20190424	사물주소	20091113	예당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출렁다리 입구
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88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60-2	20190424	사물주소	20091113	예당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출렁다리 입구(관리사무소 앞)
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2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55	20190424	사물주소	20091113	예당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출렁다리 D주차장(대형)
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2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59-7	20190424	사물주소	20091113	예당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출렁다리 D1주차장(소형)
5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2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59-13	20190424	사물주소	20091113	예당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출렁다리 D2주차장(소형)
6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33-5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59-16	20190424	사물주소	20091113	예당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출렁다리D3주차장 (소형)
7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88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60	20190424	사물주소	20091113	예당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출렁다리 E주차장(소형)
8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등촌리 199-1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00	20190424	사물주소	20091113	예당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예당관광지 휴게소주차장(소)
9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2-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219	20190424	사물주소	20091113	예당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출렁다리 C주차장(소형)
10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69-5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291	20190424	사물주소	20091113	예당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출렁다리 A주차장(대형)
1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338-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이목길 10	20190424	사물주소	20091113	행정구역명(입침리)과 고유지명(이목)을 이용하여 명명	출렁다리 B주차장(대형/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2길 66-31	20190211	건축물 멸실 및 재건축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26.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22-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 489-8	20190426	신축	20090825	역사인물 매헌 윤봉길의사 반영	
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17-1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 503	20190426	신축	20090825	역사인물 매헌 윤봉길의사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4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62-55	20190426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4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59-1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483	20190426	신축	20090825	충청남도 서쪽의 중심도로로 방위사용	
5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524-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가마고개로 15-6	20190426	신축	20091113	예부터내려오는 고유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524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가마고개로 15-10	20190426	신축	20091113	예부터내려오는 고유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11-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당관광로 654-4	20190426	누락	20091113	예당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17-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57-15	20190426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20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140-39	20190426	신축	20091113	옛 지명(간량골,간량동)을 이용하여 간양길로 명명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88-1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남길 43	20190426	신축	20091113	대치리의 남쪽길로 행정구역명(대치리)와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이티리 366-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배티길 73	20190426	신축	20091113	무한천 상류지역으로 예전에는 갯고랑이었기 때문에 배를 매는곳이라는 배티에서 유래	
1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46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3길 6	20190426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복당리)을 이용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202-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1길 135-5	20190426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시목리)을 이용하여 명명	
14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13-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길 140-12	20190426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석리)를 이용하여 명명	
1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태리 16-1, 16, 16-3, 16-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태2길 22-13	20190426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태리)을 이용하여 명명	
16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977, 97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1길 72	20190426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용궁리)을 이용하여 명명	
1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188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1길 80	20190426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효교리)을 이용하여 명명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483	20190424	건축물 철거 및 재건축	

예산군 고시 제2019-59호

예산군 납세자권리현장 전부개정 고시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납세자권리현장을 전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30.

예 산 군 수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 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구역 지정 및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4월 17일

예 산 군 수

1.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구역 지정 공고 내역

읍·면·동	구 간	거리(m)	비 고
응봉면 입침리	응봉면 입침리 수문관리사무소앞 부터 평촌리 평촌3가 편도 1차로 구간 (입침리336-7 ~ 등촌리 312-1)	약2.9K	

2. 공고기간 : 2019.04.17 ~ 2019.05.07(21일간)

3. 공고방법 : 예산군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4.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청 건설교통과(교통지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

다. 의견제출처: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41-339-7697)

라. 의견 제출방법: 방문, 팩스 및 우편 제출

※ 팩스 전송 시, 별도 유선 통보

- 주소: (우) 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 팩스: 041-339-7697

※ 공고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위치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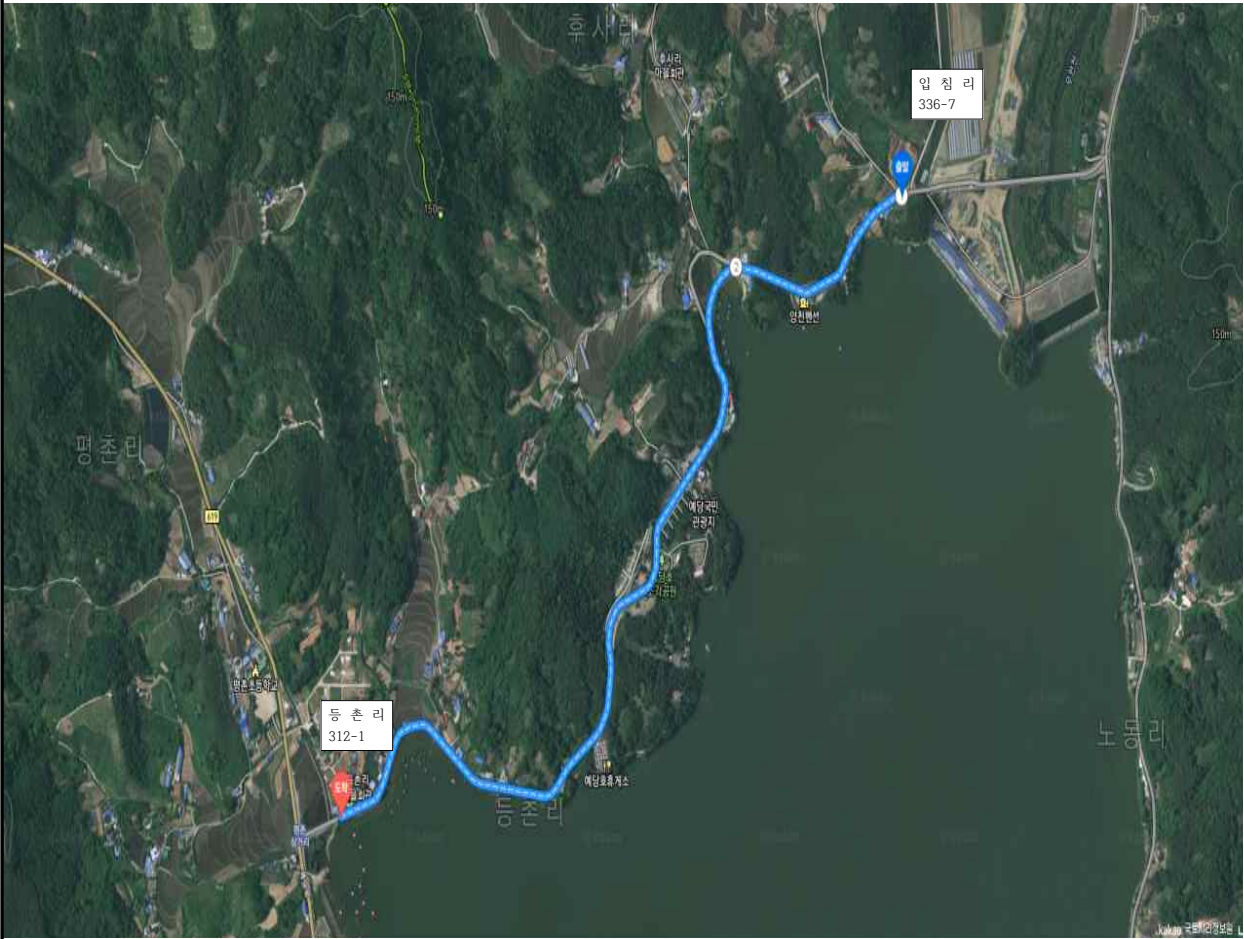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1]

위 치 도

지정구간

응봉면 입침리 336-7 ~ 응봉면 등촌리 312-1



예산군 치매공공후견인 모집 공고

2019년도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사업에 따른 참여자(치매노인 대상 후견인)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예산군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사업별	채용분야	채용인원	활동비 및 근로계약 기간	활동 내용
치매관리 사업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인	2명	- 활동비 : 아래 참고 - 근로기간 : 2019. ~ 2020.12.31.	치매노인 대상 재산관리, 신상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활동 수행

2. 채용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접수기간	2019.4.25.(목)부터 2019.5.15.(수)까지	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041-339-6125)
서류전형	개별통보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자는 개별통보
합격자발표	2019.5.24.(금)	개별통보

3. 응시자격

○ 채용 분야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

구 분		면허(자격)증	응 시 자 격
치매관리 사업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인	운전가능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민법」 제937조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4. 채용예정자 직무내용

구 분		면허자격	직무내용
치매관리 사업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인	운전가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등 * 법원에서 결정되는 후견유형에 따라 임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5. 근무조건

- 가. 신 분 :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인
 나. 계약기간 : 2019년 계약체결 시부터~ 2020.12.31.
 다. 활 동 비 : 활동비 지급시점은 후견인후보자와 피후견인 매칭(계약)이후

활 동 비	1인 후견 담당: 20만원 (18시간 근무) 2인 후견 담당: 30만원 (27시간 근무) 3인 후견 담당: 40만원 (36시간 근무)
-------	--

- 라. 근무방법 : 관내 피후견인(치매어르신) 가정방문 관리 등
 마. 기타사항 :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6. 채용방법 및 일정

가.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선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관련 분야 경력	50
관련분야 교육수료 및 자격증	20
참여 적극성	15
건강상태 및 수행능력	15

※관련분야(예시) : 의료직, 사회복지직, 노인장기요양직, 법원 전문직, 행정직, 후견활동 등

○ 2차 :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실시(개별 통보)

나. 선발일정

- 선발 후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하여 법원에서 심판 후 선임
- 참가자 신청 현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진행

7. 제출서류

분야	내용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 1부 (붙임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붙임2) ③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사본 각 1부 ⑤ 기타 경력 관련 서류 (해당시)

8.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접수 및 문의 사항은 예산군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 (☎041-339-61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본인은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사업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본 치매안심센터와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급여 지급 및 참여자 관리 (부적격·부정수급, 사회보험 등) 등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15조제1항의2·3,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귀하께서 제출하신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간 보존됩니다.

※ 본인의 구직관련 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취업지원기관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따라 인증받은 고용 서비스 우수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예산군수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확대(안 제17조제2항)
 -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 대상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재무과장, (우)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41-339-7394, 팩스 041-339-7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의 건 서

조례명 :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 을 “감정평가업자”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가격평정)</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 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법인의</u>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 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 다.</p>	<p>제17조(가격평정)</p> <p>① (생 략)</p> <p>② ----- -----<u>감정평가업자</u> ----- ----- -----.</p>

【붙임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2.>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 ⑧ 생략